

고종의 공사파견과 그 의미

현광호(고려대학교)

논문 요약

본 연구는 고종의 공사파견과 의미를 분석했다.

첫째, 고종은 공사파견에 대해 조약규정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고 열강에 한국의 독립을 증명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그에 따라 고종은 1887년 프랑스·러시아·영국·독일·이탈리아 및 미국에 공사를 파견했다.

둘째, 고종은 청일전쟁을 전후한 시기 일본의 침략을 견제하는데 외교 목표를 설정했다.

셋째, 고종은 대한제국을 수립한 직후 일본 침략 견제에 외교 목표를 설정했다.

넷째, 고종은 러시아·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열강국에 특명전권공사를 파견했고, 상설 공사관을 설치했다.

다섯째, 고종은 영일동맹 체결 직후 러·일간의 대립이 더욱 격렬해지자 국제기구를 이용하여 국권을 수호하는데 외교 목표를 설정했다.

여섯째, 고종은 러·일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만국평화회의·적십자회의 등 국제기구와의 교섭을 시도했다.

고종은 국권을 수호하고자 서구열강을 통해 한국의 중립화에 관한 국제협정을 체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고종은 그러한 구상을 실현시키고자 부단히 공사를 파견했다.

주제어 : 고종, 전권공사,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만국평화회의, 적십자회의

I. 머리말

개화기 공사 파견의 주체는 한국¹⁾의 외교를 주관한 국왕 고종이었다. 고종은 한국의 국권을 위협하는 청, 일을 경계했고, 국권유지의 수단으로 1880년대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등의 구미열강과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고종은 한국에 주재하던 외국공사를 통해 해외 정세를 파악했다. 한국은 1887년 처음으로 해외에 공사(公使)를 파견했다. 이후 한국이 공사관을 개설한 국가는 프랑스, 러시아, 영국, 독일 등의 유럽국가들과 미국, 일본, 청이었다. 한편으로 해외 주재 한국 공사는 고종이 신임하는 인물들이었고, 고종의 대외정책을 집행하는 대리인이기도 했다. 그런 측면에서 해외 공사의 활동은 고종의 대외정책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공사들은 고종의 지시만을 이행하는데만 머물지는 않았다. 이들은 외국정부와 접촉하면서 외국의 정세를 분석하여 고종의 정책 입안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종래 해외 공사들의 활동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먼저 주미공사에 대한 연구는 박정양, 이하영, 이채연, 이승수, 서광범, 이범진에 집중되었고²⁾, 대한제국기인 1901년부터 1903년까지 주미공사로 활동한 조민희의 체미 활동에 대해서는 공백상태이다. 주일공사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연구가 진척된 편이라 보여진다.³⁾ 주러공사에 대한 연구는 이범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대한제국기의 주요 시기인 1899년부터 1903년까지의 이범진의 외교활동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⁴⁾

고종이 해외에 공사를 파견한 시기는 국권 유린을 절감한 시기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고종은 공사들에게 양국간의 현안 교섭, 해당 국가의 선진제도 및

1) 이하 조선과 대한제국을 모두 한국으로 통일하여 서술함.

2) 방선주, "서광범과 이범진." 『한국사학논총』, 서울: 탐구당, 1987; 이민식, 『근대 한미관계사』, 서울: 백산자료원, 2001; 김원모, 『개화기 한미 교섭관계사』,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3.

3) 이민식, "금산 이하영 연구." 『백산학보』 50, 1998; 오영섭, "동농 김가진의 개회사상과 개화활동." 『한국사상사학』 20, 2003.

4) 김철웅, "주미공사 이범진의 미국 여정과 활동." 『역사학보』 205, 2010.

문물 도입, 유학생 보호, 외교사절단 대접 등의 통상적인 업무 외에 열강의 동아시아정책 및 대한정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도록 하는 한편 열강이 한국의 중립화에 협조하고 유사시에는 거중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 고종은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고 공사를 파견했고 해외 주재 공사의 활동은 고종의 의중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종의 공사파견과 의미를 분석하려고 한다. 시기는 한반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을 중심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공사파견 직후 시기, 청일전쟁 발발 직후 시기, 대한제국 수립 직후 시기, 의화단사건 직후 시기, 제1차 영일동맹 체결 직후 시기, 러일전쟁 발발 전후 시기 등 크게 여섯 시기이다. 본 연구는 공사 파견과 공사의 활동을 분석하여 고종 외교의 목표를 구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종의 공사파견 외교를 분석하고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열강의 한국관계 외교문서를 활용했다. 또 한국측의 외교문서인 『구한국외교문서』와 장서각 소장의 1차 자료를 활용했다. 장서각의 자료는 고종의 지시로 작성된 해외파견 공사들에 대한 신임장(信任狀), 해임장(解任狀), 국서(國書), 친서(親書), 훈유문(訓諭文) 등이 있다. 장서각 자료들은 시기적으로 1882년 조미통상조약부터 1905년 을사늑약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 있다. 교섭 국가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헝가리 등의 구미국가들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됐다. 본문의 각주에 기재한 문서번호들은 모두 장서각 문서번호를 의미한다. 본 연구가 고종의 외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고종의 공사파견 시도

1. 고종의 공사파견 배경

고종은 1880년 9월부터 청과의 조공책봉관계를 근대 민국공법질서로 전환시키려 했다. 그에 따라 고종은 미국 등 서구국가들과의 수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수교 직후 미국대통령은 1883년 3월 14일에 서명한 조미통상조약의 비준서에서 조미통상조약은 주권국가의 협약에 의거하여 체결됐다고 지적함으로써 한국이 주권국가임을 인정했다. 한편 청은 1882년에 발발한 임오군란을 계기로 의례적인 조공국이었던 한국을 근대적인 속방으로 편입하기 위해 획책했다.⁵⁾ 그 결과 고종은 청의 간섭으로부터 한국의 국권을 수호하는 것을 중요 국정과제로 삼았다. 그때 고종에게 조언을 한 것은 한국 주재 서구 외교관들이었다.

한국 주재 미국 대리공사인 포크(George C. Foulk)는 고종에게 청에 대항하는 방안으로 통상조약을 체결한 구미 각국에 구미공사를 파견할 것을 권고했다. 1886년 4월부터 한국의 외교고문으로 활동해온 데니(O. N. Denny)도 고종에게 구미 각국에 전권공사를 파견할 것을 건의했다.⁶⁾ 포크와 데니가

5) 강상규,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한반도』, 서울: 논형, 2008, pp. 185~186.

6) 1815년에 제정된 <외교관의 석차에 관한 규정>은 외교관의 등급을 대사, 전권공사, 변리공사, 대리공사 등 4등급으로 구분했다. 전권공사, 변리공사, 대리공사는 다같은 공사이기는 하지만 차등이 있었다. 전권공사, 변리공사는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접수국의 국가원수에 보내는 신임장을 휴대했다. 대리공사는 파견국의 외무장관이 접수국의 외무장관에 보내는 신임장을 휴대했다. 그러므로 대리공사는 공사 중에서도 가장 격이 낮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권공사는 전권을 위임받은 공사였다는 점에서 변리공사보다 격이 높았다.

한국에서 외국사절들의 서열을 정한 것은 한국 정부의 외교 고문 르장드르(Charles W. Legendre)였다. 르장드르는 유럽의 국제관계사의 저자들은 열강 대표들을 외교단과 영사단으로 구분하며 외교단은 영사단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단은 대사, 전권공사, 주재공사, 대리공사, 정부위원을 의미하며, 영사단은 총영사, 영사를 지칭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럽 열강은 영사들을 위하여 별도의 의식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영사들이 군주를 알현하는 것은 관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위원은 전권공사, 주재공사, 대리공사와 같은 임무라 주장하며 프랑스 정부위원은 프랑스 공화국을 대표하므로 신임장에 영사가 없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에 따라 한국 정부는 프랑스의 외교 서열을 독일보다 높이 배열했다. 『프랑스문서』 6, 1894년 3월 16일, pp. 145~146.

주장한 바의 요지는 ‘한국이 빈약하여 자주할 수 없기 때문에 청의 제재를 받게 되고, 각국에서도 대리공사와 영사를 파견하여 동등한 국가로 상대하지 않고 있다. 만약 한국이 각국에 전권공사를 파견한다면 각국에서도 격이 높은 사절을 파견하게 될 것이다. 열강은 권세가 있어서 사단이 있을 때마다 견제할 것이므로 청이 감히 한국을 속방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딘스모어(Hugh A. Dinsmore) 미국 공사와 베베르(Karl Ivanovich de Waeber) 러시아 공사도 공사파견을 권고했다. 그 과정에서 고종은 1887년 4월 경 폐위음모와 대원군 국정감독설을 인지하자 본격적으로 공사파견을 검토했다. 고종은 포크와 데니의 요청을 수용하여 이홍장과 원세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전권공사를 파견하기로 결심했다.⁷⁾

고종은 공사파견에 대해 조약규정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고 열강에 한국독립을 증명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⁸⁾ 고종은 열강이 한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기를 열망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구미 각국에 공사를 파견하기로 결심했다.⁹⁾ 그에 대해 청과의 관계를 중시했던 심순택, 김홍집, 김병시, 민응식 등의 대신들은 공사파견에 반대했다.¹⁰⁾ 반청적인 고종과 친청적인 대신들 간에는 외교노선을 둘러싸고 갈등이 극심했다. 친청세력은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여 왕권의 약화를 야기했다. 친청파는 심순택, 김홍집, 김병시, 김윤식 등의 대신들이었다. 김윤식은 고종이 추진한 조러밀약을 좌절시킨 바 있었다. 또 심순택, 김홍집, 김병시, 민응식 등의 친청파 대신들은 파사에 반대했다.¹¹⁾ 고종은 청의 통제를 받고 있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을 무력화시켰다. 고종은 독판에게 실권을 주지 않았으며, 독판을 빈번히 교체하였으므로 어떤 독판

7) 『프랑스문서』 3,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4(이하 『프랑스문서』로 약칭), 1889년 1월 10일, p. 5; 송병기, “소위 ‘삼단’에 대하여—근대 한청관계사의 한 연구—.” 『사학지』 6, 1972, pp. 96~97.
8) Spencer J. Palmer, *Korean-American Relations VOLUME II*(1887~1895).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3(이하 K-A-R II로 약칭), No.53. 1887년 9월 30일, p. 101.
9) 『프랑스문서』 4,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5, 1890년 11월 16일, pp. 239~243.
10) 송병기, 앞의 글, p. 97.
11) 송병기, 앞의 글, p. 97.

도 임기를 1년 이상 담당할 인물은 없었다.¹²⁾ 고종은 친청적 대신들을 신뢰하지 않았으므로 실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심순택, 김홍집, 김병시 등은 부단히 사의를 표명했다.¹³⁾ 고종은 1880년대 후반 내무부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내무부는 고종이 권력이 직접 행사되는 곳으로, 주로 국내외 정책을 입안했다. 내무부 관리들은 고종의 핵심 측근들로 반청적인 입장을 보였던 인물들이 다수였다. 외국인 고문들은 대부분 내무부협판직을 겸임했고, 외국법과 관련된 문제를 전담했다.¹⁴⁾ 고종은 내무부 관리를 공사에 내정했다.

2. 고종의 공사 파견 강행

고종은 1887년 8월 내무부협판 조신희를 프랑스, 러시아, 영국, 독일, 이태리 등 5개국의 전권공사에 임명했다.¹⁵⁾ 1888년 1월 한국을 출발한 조신희는 홍콩을 경유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을 거쳐 러시아의 페체르부르크에 상주할 예정이었다. 조신희는 프랑스어, 영어에 능통한 외국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홍콩에 머무르면서 3년 동안 고종의 지시를 대기했다.¹⁶⁾ 청은 한국의 외교적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의 원세개는 조신희의 소환을 고종에게 강력히 요구했다.¹⁷⁾ 조신희는 청이 박정양의 소환을 강력히 요구하자 사태의 추이를

12) 『프랑스문서』 2, 1888년 9월 10일, p. 64.

13) 『高宗實錄』 卷25, 고종 25년 3월 18일, 3월 21일, 4월 5일.

14) 『프랑스문서』 5, 1891년 1월 26일, pp. 10~12.

15) 장서각 문서번호 675(이하 문서번호는 모두 장서각 문서번호를 의미함). 1887년 8월 22일의 신임장(문서번호 652)은 독일 및 프로이센 군주에게 보낸 부분으로서 조신희를 독일 및 프로이센의 전권공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1887년 8월 22일의 신임장(문서번호 647)은 이탈리아 군주에게 보낸 부분으로서 조신희를 이탈리아의 전권공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1887년 8월 22일의 신임장(문서번호 648)은 러시아 군주에게 보낸 부분으로서 내무부협판 조신희를 러시아의 전권공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16) 『프랑스외무부문서』 2,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3(이하 『프랑스문서』 2로 약칭), 1888년 7월 30일, p. 52; 『법안 1』, No.47. 1888년 7월 20일, p. 19; 『프랑스문서』 3, 1889년 9월 27일, pp. 197~198; 박종효 편역,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관련문서 요약집』(한국국제교류재단, 2002)(이하 『러시아문서 요약집』으로 약칭), 1888년 4월 5일, p. 164.

17) 『프랑스문서』 3, 1889년 2월 19일, pp. 45~47.

관망했다.¹⁸⁾ 청은 조신회의 임무 수행을 방해했다. 결국 조신회는 고종의 명령 없이 홍콩을 출발하여 1890년 1월 부산에 도착했다. 고종은 조신회에게 근무지 이탈죄를 적용하고 전라도 합월에 유배를 보냈다. 고종은 친진주재 통상사무독리를 역임했던 박제순을 유럽의 특명전권공사에 제수하고 전임자의 직무를 계속하게 했다.¹⁹⁾ 그러나 박제순도 유럽으로 출발하지 못했다.²⁰⁾

고종은 유럽에 대한 공사파견과 동시에 미국에 대한 공사파견을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1887년 7월 박정양을 주미공사에 임명했다.²¹⁾ 고종은 원세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파견에 확고부동한 태도를 보였다. 고종은 청이 방해할 것을 우려하여 매일 딘스모어 미국 공사에게 공사파견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²²⁾ 고종은 미대통령에 보낸 국서에서 미국과의 첫번째 조약을 체결한 것은 조·미간의 우호 관계를 증명한다고 전제하고, 조·미간의 상업 관계를 강화하고자 박정양을 미국의 전권공사에 임명했으니 그를 신임하고 자주 면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²³⁾ 고종은 주미공사를 통해 미국정부와의 직접 외교를 추구한 것이다. 한국의 전권공사 파견을 강력히 반대해온 청은 군함을 보내 박정양을 체포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군함을 제물포에 파견하여 박정양을 영접했다.²⁴⁾ 박정양은 워싱턴에 도착한 뒤 1888년 1월 15일 클리블랜드 미대통령에게 국서를 제출했다.²⁵⁾

청은 한국 공사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에 ‘영약삼단(另約三端)’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²⁶⁾ 박정양은 청의 ‘영약삼단’ 준수 요구를 거부

18) 『러시아문서 요약집』, 1890년 5월 21일, p. 118.

19)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구한국의교문서 『법안 1』』, No.235. 1890년 2월 20일, p. 102.

20) 『프랑스문서』 4, 1890년 2월 5일, pp. 59~61; 『프랑스문서』 4, 1890년 3월 22일, pp. 114~115.

21) 『고종실록』 권24, 고종 24년 6월 29일.

22) K-A-R II, No.53. 1887년 9월 30일, p. 101.

23) K-A-R II, No.59. 1887년 12월 27일, p. 113.

24) K-A-R II, No.71. 1887년 11월 11일, p. 106; 『프랑스문서』 3, 1889년 1월 10일, pp. 3~6.

25) 『한국근대 외교사건』, p. 550.

26) 영약삼단이란 1. 조선공사는 청국공사와 함께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방문할 것, 2. 조선공사는 공식 행사 때 청국공사의 다음에 입장하며 그 아랫 좌석에 앉을 것, 3. 조선공사는 중요한 사무를 청국공사와 상의한 뒤 그 지시를 따를 것이었다. 삼단은 대외적으로 조선공사에 대한 청국공사의 우월권을 인정하는 것인 동시에 조선의 외교상 자주권을 심히 제약하는 것이었다.

하여 청 공사를 배제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하는 등 자주외교를 추구했다. 청은 한국 정부에 박정양의 소환을 강요하여 결국 박정양은 1888년 11월 19일 워싱턴을 떠나야 했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유럽열강과의 외교에 적극성을 보였다. 고종은 청, 일의 침략을 받을 경우 통상조약 제1조의 거중조정조항에 의거하여 유럽 열강에 중재를 의뢰하고자 했다. 또 고종은 유럽열강을 통해 한국의 중립화에 관한 국제협정을 체결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고종은 그를 위하여 1890년 재차 전권공사를 파견하려 했으나 청의 반대 및 재정부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²⁸⁾ 이후 고종은 1891년 6월 미국 공사에게 미국 정부가 주도하여 스위스의 분할을 방지하는 조약을 한국에도 적용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종은 라일미가 그 협정 체결에 있어 선두에 서고, 그 다음에는 이태라프랑스·독일·영국청이 가담할 것을 기대했다.²⁹⁾

III. 청일전쟁 발발 이후 고종의 공사파견

1. 청일전쟁 발발 직후 공사파견

일본은 동학농민전쟁 때 한국에 파병했으며, 청과의 전쟁을 기도했다. 주일 공사 고영희는 고종에게 일본이 한국에서 전쟁을 도발할 것이라는 전보를 보냈다.³⁰⁾ 고종은 일본의 침략을 당해 미국·프랑스·러시아에 크게 의지했다. 고종은 실(John M.B. Sill) 미국 공사에게 보호를 요청했으며, 실은 보호 요청에 동의하며 긴급사태 때 고종을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주미 공사 이승

27) 『프랑스문서』 4, 1890년 1월 6일, pp. 3~5.

28) 『한영외교사관계자료집』 8, No. 3, 1897년 1월 14일, pp. 245~246.

29) K-A-R II, No.168. 1891년 6월 3일, p. 250.

30) K-A-R II, No.15. 1894년 6월 28일, p. 333.

수는 미국무장관이 일본 정부의 요구에 대응하여 한국측에 자문했음을 전보로 보고했다.³¹⁾ 고종은 곧 일본이 전쟁을 개시할 것이라 예측하고 한국 주재 구미 국가의 대표들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영·프·러 대표는 공동으로 청·일 대표에 철군을 요청했다. 그 뒤 일본군은 7월 23일 경복궁을 습격해 고종을 포로로 잡았다.³²⁾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관 조병직은 프랑스 공사 르페브르(G. Lefevre)에게 조·일군의 경복궁 충돌에 대해 중재를 부탁했다.³³⁾ 고종은 외국대표에게 중재를 요청했으며, 미·영·러·프 대표는 철군 요청을 중재했다. 그 뒤 미·러·프 대표들이 중재의 중심 역할을 했다.³⁴⁾

한편 한국 정부는 8월 열강 정부에 대해 청과의 종속(宗屬) 관계를 인정한 제조약을 철폐한다고 통보했다.³⁵⁾ 한국은 청일전쟁을 계기로 청과의 조공관계를 종식하는 등 청으로부터 국가주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한국은 마침내 조공체제를 탈피하고 만국평등에 입각한 근대국제법 체제에 진입했다. 그러나 청을 축출한 일본은 한국보호국화를 시도하는 등 한국의 자주권을 유린했다. 그때 러시아는 1895년 5월 독·프와 연합하여 삼국간섭을 단행했다.

그 과정에서 고종은 구미 국가들과의 외교를 강화하고자 했다. 고종은 1895년 3월 25일 외교관·공사관 제도를 칙령으로 반포했다.³⁶⁾ 이후 고종은 1895년 10월 의화군을 독일, 영국, 러시아, 이태리,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했다.³⁷⁾ 한편 고종은 미국 주재 대표를 특명전권공사로 승격시키고, 1895년 12월 서광범을 미국 주재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했다.³⁸⁾

31) K-A-R II, No.16. 1894년 7월 일, p. 335; K-A-R II, 텔레그램, 1894년 7월 8일, p. 338.
32) K-A-R II, No.15. 1894년 6월 28일, p. 333; K-A-R II, No.16. 1894년 7월 일, p. 335; 『러시아문서 요약집』, 1894년 8월 18일, p. 263.

33) 『법안 1』, No.558. 1894년 6월 24일, p. 227; 『법안 1』, No.562. 1894년 7월 23일, p. 228.

34) K-A-R II, No.33. 1894년 7월 24일, p. 338; K-A-R II, No.107. 1895년 4월 17일, p. 354.

35) 『법안 1』, No.567. 1894년 8월 15일, p. 230.

36) 송병기·박용욱·박한설 편,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 서울: 국회도서관, 1971, pp. 208~210.

37) 『러시아문서 요약집』, 1895년 10월 19일, p. 180.

38) 1895년 11월 13일의 신임장(문서번호 668)은 고종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서 종1품 서광범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미국 수도에 주차시켜 교섭을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고종은 1896년 2월 아관파천을 단행하여 친일 내각을 붕괴시켰다. 고종은 아관파천 뒤 외국대표들에 더욱 의지했다. 그에 따라 고종은 명례궁에서 중요 의식을 거행할 때는 러·미·독·영·프 대표에게 시위해줄 것을 부탁하는 한편 러·미·프·독 등에 이권을 허여했다.³⁹⁾ 고종은 3월 궁내부특진관 민영환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한 뒤 러시아에 파견하여 러시아 정부에 200명의 군사교관을 한국에 파견시켜 줄 것을 제의하게 했다.

고종은 1897년 2월 20일 외국공사관이 모여 있는 정동에 소재한 경운궁으로 환궁을 결정했다. 고종은 환궁을 단행할 무렵인 1897년 1월 민영환을 영국·독일·프랑스·러시아·이태리·오스트리아의 특명전권공사에 임명했다. 이같은 고종의 시도는 1880년대 이래 유럽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⁴⁰⁾

일본정부는 환궁 직후인 2월 24일 베베르·고무라 각서(Waeber-Komura Memorandum) 및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Lobanov-Yamagata Protocol)를 공개했다. 한국정부는 비밀리에 체결된 이 협정들이 한국의 주권을 유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경악하였다.⁴¹⁾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이 관련되어 있는데도 한국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협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한편 러시아가 일본과 합의한 것에 큰 배신감을 가졌다.⁴²⁾ 고종은 일련의 러·일협정들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식했고, 이에 따라 영국·프랑스·미국·독일 등에 거중조정(good office s)을 요청했다. 고종은 미국과 영국외교사절단에 중재를 의뢰했고, 프랑스공사관에도 육군이나 해군의 소부대의 주둔을 제의했다. 그 과정에서 영국 총영사관측은 해군을 동원하여 총영사관을 수비하게 했고, 미국도 제물포에 군함

39) 『프랑스문서』 7, 1896년 9월 5일, pp. 224~225; 『프랑스문서』 7, 1896년 9월 22일, p. 231.

40) 『영국의무성 한영외교사관계자료집』, 서울: 동광출판사, 1997(이하 『한영자료집』으로 약칭) 8, No.33. 1897년 1월 14일, p. 245.

41) 『한영자료집』, No. 25, 1897년 3월 10일, pp. 290~291; 『뮌헨 주교 일기』 II,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p. 151.

42) 『프랑스문서』 8,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9, 1897년 3월 13일, p. 27.

한척을 파견했다.⁴³⁾ 한편 영국 정부는 러·일만이 한국에 군대를 주둔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영국은 서울에 해군경비대를 파견했고, 특명전권공사 맥도널드(Claude MacDonald)를 서둘러 서울에 보냈다. 영국은 러·일간의 합의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고종은 이같은 영국의 시도를 수용하고,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행사에 민영환을 대사자격으로 파견했다.⁴⁴⁾ 동시에 고종은 민영환에게 프랑스 대통령, 독일 황제, 이탈리아 군주를 알현하고 신임장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⁴⁵⁾

고종은 민영환을 러시아에 상주시키려 했다. 민영환은 1897년 3월 24일 인천을 떠났다. 민영환은 공사관 직원으로 민상호, 민영찬 등을 대동하고 5월 뻬제르부르크에 도착했다. 민영환은 곧 런던으로 출발하며 뻬제르부르크 주재 미국공사에게 공사업무를 위탁했다.⁴⁶⁾ 고종은 민영환이 출발한 직후 주한 프랑스공사 플랑시를 통해 민영환에게 프랑스·독일·영국과 협의하여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 민영환은 6월 5일 런던에 도착했다. 그런데 영국은 한러밀약과 관련, 고종의 국서와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 그 뒤 민영환은 프랑스·독일과 밀약 교섭을 하지 않았다.⁴⁷⁾ 한편으로 프랑스 외무성은 한국의 요청을 외면하라는 플랑시의 건의를 수용하였다. 또 민영환도 사명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도피하였으므로

43) 『뒤틀 주교 일기』 II, 1897년 4월 2일, pp.156~159; 같은 책, 1897년 4월 12일, pp. 169~170.

44) 『프랑스문서』 8, 1897년 3월 14일, pp. 28~29; 『프랑스문서』 8, 1897년 5월 6일, p. 51.
고종은 1897년 3월 민영환을 대사로 임명하여 빅토리아 영국 여왕의 즉위 60년을 축하하는 친서(문서번호 643)를 봉정하게 했다. 동시에 고종은 민영환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고 영국 군주에게 신임장(문서번호 672)을 봉정하게 했다.

45) 고종은 1897년 3월 22일 군부대신 민영환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고 프랑스 대통령에게 신임장(문서번호 653)을 봉정하게 했다. 동시에 고종은 민영환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고 독일 황제에게 신임장(문서번호 638)을 봉정하게 했다. 또 고종은 민영환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고 이탈리아 군주에게 신임장(문서번호 632)을 봉정하게 했다.

46) 『러시아문서 요약집』, 1897년 4월 3일, p. 161; 『러시아문서 요약집』, 1897년 4월 28일, p. 161.

47) 『한영자료집』 8, No.108, 1897년 8월 3일, pp. 342~343; 김원모, “한국의 영국 축하사절단 파견과 한·영외교관계.” 『동양학』 32, 2002, pp. 101~103.

고종의 계획은 무산되었다.⁴⁸⁾ 그러므로 고종은 특명전권공사 민영환을 해임했다.⁴⁹⁾ 고종은 민영환의 후임으로 민영익을 9월 영국·독일·러시아·이태리·프랑스·오스트리아 전권공사로 임명했다.⁵⁰⁾ 그러나 민영익은 유럽에의 부임을 기피했다.⁵¹⁾ 이상과 같은 고종의 외교는 통상조약 제1조에 명문화된 거중조정 조항을 통해 유사시 열강들의 지원을 받으려 한 것이었다. 또 고종은 유럽열강을 통해 한국중립화에 관한 국제협정을 체결하려는 구상을 실천에 옮기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대한제국 수립 직후 고종의 공사파견

고종은 국제관계는 공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공법상 일단 국가로 승인을 받으면 국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고종은 국가는 군주의 이름으로 대표된다고 인식했다. 그러므로 고종은 군주권의 공고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았다.⁵²⁾ 결국 고종은 1897년 10월 자주독립을 내외적으로 천명할 목적으로 칭제(稱帝)를 단행하고,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제정했다.⁵³⁾ 고종

48) 『뒤틀 주교 일기』 II, 1897년 7월 23일, p. 193; 『한영자료집』 8, No.108, 1897년 8월 3일, p. 342~343; 장 끌로드 알랭, “고종재위기간의 한불관계.” 『한불외교사(1886~1986)』, 서울: 평민사, 1987, p. 93~94; 『한국근대 외교사전』, p. 211.

49) 1897년 9월 21일의 해임장(문서번호 687)은 고종이 영국 군주에게 보낸 것으로서 특명전권공사 민영환의 해임을 알리는 내용이다. 1899년 11월 1일의 해임장(문서번호 682)은 고종이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것으로서 특명전권공사 민영환의 해임을 알리는 내용이다.

50) 1897년 9월 21일의 신임장(문서번호 664)은 고종이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서 민영익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프랑스 수도에 주차시켜 교섭을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1897년 9월 21일의 신임장(문서번호 662)은 고종이 오스트리아 황제 겸 보헤미아 군주·헝가리 전교군주에게 보낸 것으로서 종1품 민영익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오스트리아 및 보헤미아와 헝가리 수도에 주차시켜 교섭을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1897년 9월 21일의 신임장(문서번호 663)은 고종이 독일 황제 겸 프로이센 군주에게 보낸 것으로서 민영익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독일 및 프로이센 수도에 주차시켜 교섭을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1897년 9월 21일의 신임장(문서번호 671)은 고종이 이탈리아 군주에게 보낸 것으로서 민영익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이탈리아 수도에 주차시켜 교섭을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51) 『英案 1』 No.1257, 光武 원년 9월 22일; 『같은 책』 No.1365, 光武 2년 5월 24일; 『한영자료집』 9, No.115, 1898년 6월 1일, p. 81.

52) 강상규, 앞의 책, p. 201.

53) 이하 대한제국을 한국으로 약칭.

은 유럽 열강이 청제를 승인하자 유럽국가에 대한 사절단 파견을 열망했다.⁵⁴⁾ 그에 따라 고종은 1898년 5월 성기운을 영국·독일·이태리 전권공사로 임명했다.⁵⁵⁾

한편 러시아는 1898년 4월 25일 일본과 러·일의 한국 내정에의 불간섭,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의 한국 파견시 상호 협의, 일본의 한국내 상공업 발전을 인정하다는 내용의 로젠-니시협정(Rosen-Nishi Convention)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내 특수 이익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로젠-니시협정 발표와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철수는 러시아의 한국내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 주둔중인 2개 중대의 일본군은 고종에게 큰 위협을 주었다.⁵⁶⁾ 또 고종은 일본 정부의 망명자 비호에 의구심을 가졌다. 고종은 러시아를 경원시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우호 제스처를 보였다. 고종은 독립협회운동이 격화하자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러시아은행으로부터 차관 도입을 위하여 러시아에 차관 도입을 의뢰하기도 했다.⁵⁷⁾ 그 과정에서 고종은 1899년 3월 15일 신임하던 이범진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러시아와의 외교를 강화하고자 했다. 고종은 1899년 11월 이범진에게 신임장을 주고 러시아 황제에게 제출하도록 명령했다.⁵⁸⁾ 이범진은 1900년 7월 3일 뻬제르부르크에 도착한 뒤 13일 니콜라이 2세에게 국서를 제출했다.⁵⁹⁾

54) 『한영자료집』 9, No.1, 1898년 1월 2일, p. 14.

55) 『英案 1』 No.1257, 光武 원년 9월 22일; 같은 책, No.1365, 光武 2년 5월 24일; 『한영자료집』 9, No.115, 1898년 6월 1일, p. 81.

56) 『러시아문서 요약집』, 1898년 11월 14일, p. 141.

57) 『러시아문서 요약집』, 1899년 1월 30일; 같은 책, 1899년 2월 2일, p. 17; 같은 책, 1899년 1월 31일, p. 235; 위의 책, 1899년 2월 5일, p. 236.

58) 1899년 11월 1일의 신임장(문서번호 673)은 고종이 오스트리아 황제 겸 보헤미아 군주·헝가리 전교군주에게 보낸 것으로서 이범진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오스트리아 및 보헤미아와 헝가리 수도에 주차시켜 교섭을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1899년 11월 1일의 신임장(문서번호 674)은 고종이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것으로서 종1품 이범진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러시아 수도에 주차시켜 교섭을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59) 『한국근대 외교사건』, p. 546.

IV. 러·일의 개전위기와 공사파견

1. 의화단사건 직후의 공사파견

청의 의화단은 1900년 4월 수도인 북경에 진입하는 등 급속히 세력을 확장했다. 고종은 의화단사건이 한국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고종은 알렌 미국공사에게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할 경우 러·일간의 대립이 격화되지 않을지를 문의다.⁶⁰⁾ 그 무렵 한국에서는 러시아, 일본에 의한 한국분할설이 유포됐다.⁶¹⁾ 고종은 외부대신 박제순을 일본공사관에 보내 러·일간에 새로운 협상이 진행되었는가를 문의하게 할 정도로 경계심을 가졌다.⁶²⁾

그 직후 고종은 1900년 8월 7일 조병식을 일본 주재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했다. 고종은 조병식에게 일본주재 외교사절들과 협의하여 이들로 하여금 한국 중립에 대한 국제협정을 본국 정부에 제의하게 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⁶³⁾ 동일한 조병식은 8월 29일 아오키(青木周藏) 외상에게 한국을 스위스·벨기에와 같이 중립화하는 데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아오키는 스위스·벨기에가 중립을 유지할만한 국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한국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병식의 제의를 거부했다.⁶⁴⁾ 이후 조병식은 주일미국공사 버크(Buck)에게 미국정부가 열강과 협력해서 한국의 독립과 중립에 대한 국제적인 보장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⁶⁵⁾ 이상과 같은 고종의 외교는

60) K-A-R III, No.275, 1900년 8월 31일, pp.81~82; 『일공사기록』 14, 기밀제49호, 1900년 6월 28일, pp. 350~351.

61) 『皇城新聞』 1900년 8월 8일 <잡보>.

62) 『皇城新聞』 1900년 8월 30일 <잡보>;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4, 機密第370號, 1900년 8월 6일, p. 370.

63) K-A-R III, No.272, 1900년 8월 23일, 62~63; *ibid.*, No.275, 1900년 8월 31일, pp. 81~83.

64) 『한영자료집』 9, No.159, 1900년 9월 18일, p. 312.

서구열강을 통해 한국의 중립화에 관한 국제협정을 체결하려 한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대군을 파견하여 만주를 점령하였고, 의화단사건이 진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과 비밀조약을 체결하여 만주를 지배하려 했다. 이에 대항하여 1901년 3월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불사하는 등 전쟁 발발의 위험성이 증대되었다.⁶⁵⁾ 종래 한국은 상대정부와의 직접 교섭보다는 특사 파견을 통한 간접 교섭에 치중하여 외교력의 한계를 노정했다. 고종은 이상과 같은 한계를 인식했음인지 유럽의 주요 열강과의 직접 외교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고종은 유럽열강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독립을 보장받으려는 목적으로 거액의 내탕금을 지출하여 유럽에 특명전권공사를 파견했다.⁶⁷⁾ 고종은 1901년 3월 러시아·프랑스·오스트리아공사를 겸직하고 있던 이범진을 러시아공사로 임명하여 러시아와의 외교에 전념하게 하고, 김만수를 주프랑스공사로 파견했다. 또 영국·독일·이태리 특명전권공사를 겸직했던 민철훈을 독일과 오스트리아공사로 임명하고, 민영돈을 영국과 이태리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했다.⁶⁸⁾ 그 뒤 고종은 1902년 2월 주프랑스공사를 민영찬으로 교체했다.⁶⁹⁾

한국은 러시아·프랑스·독일·영국 등에 상주공사관을 두게 되었고, 미국 일본도의 외교정책을 탈피하게 되었다. 고종이 유럽에 특명전권공사를 파견한 것은 유럽국가들로 하여금 한국에 파견한 외교관의 지위를 변리공사·대리공사에서 전권공사로 승격시키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65) K-A-R III, No.284, 1900년 10월 2일, pp. 69~70; *ibid.*, No.479, 1900년 10월 1일, pp. 71~72; 具永祿·裴永洙 編, 『韓美關係(1882~1982)』, 서울: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1982, 1900년 10월 3일.

66) 崔文衡, 『제국주의시대의 列強과 韓國』, 서울: 민음사, 1990, pp. 279~298.

67) 『일공사기록』 16, 機密第53號, 1901년 5월 22일, p. 49; 『東京朝日新聞』 1901년 3월 4일.

68) 『舊韓國外交文書』 <英案 2> No.1964, 1901년 3월 16일, 901년 4월 6일의 신임장(문서번호 627)은 고종이 영국 군주에게 보낸 것으로서 민영돈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영국 수도에 주차시켜 교섭을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舊韓國外交文書』 <德案 2> No.2384, 1901년 3월 16일; 『舊韓國外交文書』 <法案 2> No.1371, 1901년 3월 16일; 위의 책, No.1374, 1901년 3월 20일; 위의 책, No.1532, 1902년 1월 17일.

69) 1902년 2월 17일의 신임장(문서번호 667)은 고종이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서 민영찬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프랑스 수도에 주차시켜 교섭을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승격된 유럽의 전권공사들로 하여금 러시아·일본공사의 강경한 대항정책을 조정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유럽에 파견한 특명전권공사들로 하여금 중립문제 등을 해당 국가와 협의하게 하려는 의도를 내포했다.⁷⁰⁾ 한편 고종은 공식인 주미공사직에 이용태를 임명했다. 그러나 이용태는 부임하지 않고 공사 직함을 가진 채 의정부참찬직을 수행하였다.⁷¹⁾ 결국 고종은 1901년 4월 조민회를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했다. 이후 고종이 미국 정부가 주한공사를 전권공사로 승격시킨 데 대해 크게 만족을 표명한 것은 자신의 의도가 결실을 거두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고종은 벨기에와의 수교를 적극 추진했다. 이는 영세중립국인 벨기에의 중립정책을 파악하려는 의도 외에 벨기에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국제기구 사무국을 통해 국제기구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깔려 있었다. 고종은 1900년 6월 주일한국공사로 하여금 주일벨기에공사와 조약체결을 교섭할 것을 지시했다.⁷²⁾ 그에 따라 주일프랑스공사관에서 벨기에와 교섭을 벌였고, 1901년 3월에는 한백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고종은 벨기에와의 통상조약이 비준되기도 전인 5월 외부대신 박제순으로 하여금 벨기에 전권대신에게 헤이그평화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협조를 의뢰하게 했다. 뱅카르(Léon Vincart) 벨기에 총영사도 이를 수용하여 본국정부로부터 만국평화회의에 관한 모든 문서를 교부받아 한국정부에 전달한 뒤 계속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⁷³⁾ 고종은 주프랑스공사 민영찬을 주벨기에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벨기에와의 교섭을 담당하게 했다.⁷⁴⁾

70) 『일공사기록』 16, 機密第72號, 1901년 7월 9일, 329; 위의 책, 機密第40號, 1901년 4월 15일, p. 322.

71) 『일공사기록』 16, 발제55호, 1901년 6월 10일, p. 433.

72) 『일공사기록』 14, 機密第58號, 1900년 6월 22일, p. 357 <別紙>.

73) 『舊韓國外交文書』 <比案>, No.37, 1901년 5월 30일; 같은 책, No.55, 1901년 10월 30일; 같은 책, 1900년 11월 16일.

74) 1902년 2월 17일의 신임장(문서번호 666)은 고종이 벨기에 대군주에게 보낸 것으로서 민영찬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벨기에 수도에 주차시켜 교섭을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2. 제1차 영일동맹 체결 직후의 공사파견

1902년 1월 영일동맹은 고종의 외교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고종은 영일동맹의 당사국인 영국을 중립화 실현의 대상국으로 중시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고종은 1902년 4월 의양군 이재각을 영국 군주의 대관식에 대사로 파견했다.⁷⁵⁾

고종은 열강의 보장에 의한 중립화가 실현되지 않자 더욱 국제기구에 기대를 가졌다. 고종은 만국평화회의·적십자회의 등 국제회의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했다. 한국은 만국평화회의가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국 대표들이 조약을 체결하여 만든 기구로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여국들이 거중조정한다고 인식하였으므로⁷⁶⁾ 이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고종이 만국평화회의와 함께 관심을 기울인 것은 적십자회의였다. 적십자회의는 1864년 스위스에서 채택된 제네바조약을 기초로 전시부상자 보호를 표방했고, 또 적십자사의 활동지역은 중립지역으로 공인받았다. 한국정부가 1901년 스위스정부로부터 제네바협정안을 입수한 것은⁷⁷⁾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적십자를 이용하여 한국을 중립지역으로 인정받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고종은 1902년 초 주프랑스공사 및 주벨기에공사 민영찬에게 네덜란드 소재 만국평화회의의 사무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국제기구를 통해 중립화를 실현시키려는 의도였다. 이후 고종은 민영찬을 만국평화회의의 총재에게 보내 적십자회 가입과 만국평화회의에의 사절단 파견 등을 타진했다.⁷⁸⁾ 또 고종은 1902년 8월 민영찬을 네덜

란드로 보내 만국평화회의의 가입을 교섭하게 했다. 고종은 10월에는 민영찬을 특파대원으로 임명하여 적십자회의에 참여하게 했다. 동시에 고종은 네덜란드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적십자 사장이 민영찬과의 교섭에 응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⁷⁹⁾ 민영찬은 네덜란드에 가서 상기한 기구들을 방문한 뒤 프랑스·벨기에·스위스·벨기에·덴마크 등이 협정한 제네바 육전병상군인구제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1902년 12월 25일에는 대통령에게 적십자회 가입에 대한 국서를 봉정하고 1903년 1월 8일 가입 허가를 받았다.⁸⁰⁾ 민영찬은 2월 8일 제네바조약에 서명하였다. 이후 고종은 7월 2일 민영찬을 적십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고 9월 14일 개최되는 제네바회의에 참석할 것을 지시했다.⁸¹⁾

한편 주일공사 고영희는 6월 하순 쿠로파트킨(Aleksei Nicolaevich Kuropatkin) 러시아 육군대신이 방일한 뒤 러·일이 각각 만주·한국에서 자유행동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협정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전보를 고종에게 보냈다. 러·일협상설은 고종을 크게 당혹하게 했다. 고종은 고영희에게 러·일협상설의 진상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주러공사 이범진에게도 진상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얼마 후 고영희는 일본이 개전을 결정했다는 전보를 고종에게 보냈다.⁸²⁾ 고종은 만주문제로 인해 러·일이 개전할 것이라는 정보에 경악했다.

고종은 러일전쟁이 발발할 경우 엄정중립을 준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고종은 철도원 용무로 부산 방면에 출장중인 철도원 회계과장 현영운을 급거

75) 1902년 4월 6일의 국서(문서번호 645)는 고종이 의양군 이재각을 영국 군주의 대관식에 대사로 파견하겠다고 통보한 친서이다.

76) 『皇城新聞』 1900년 12월 8일, 12월 10일, 12월 11일, 12월 12일 <외보>.

77) 『舊韓國外交文書』 <瑞案> No.38, 1901년 7월 22일.

78) 『駐法比來去案』(奎-No.18065) 訓令, 光武 6년 2월 16일; 『舊韓國外交文書』 <比案> No.76, 1902년 1월 17일; 『일공사기록』 21, 往電第66號, 1903년 2월 18일, p. 266; 『舊韓國外交文書』 <荷案> No.1, 1902년 2월 16일; 같은 책, No.2, 1902년 11월 1일.

79) 1902년 10월 9일의 국서(문서번호 618)는 고종이 네덜란드 후주에게 보낸 것으로서 전권공사 민영찬을 특파대원으로 임명하여 적십자회의에 참여하고자 하니 적십자사장이 교섭에 응해달라는 내용이다.

80) 『舊韓國外交文書』 <瑞案>, No.42, 1903년 2월 8일; 『駐法比來去案』 報告第11號, 光武 7년 3월 4일; 『皇城新聞』 1903년 4월 20일.

81) 『駐法比來去案』 訓令第5號, 光武 7년 6월 23일; 같은 책, 委任書, 光武 7년 6월 23일; 같은 책, 訓令第6號, 光武 7년 7월 3일; 『高宗實錄』 卷43, 光武 7년 7월 2일; 『皇城新聞』 1903년 7월 4일.

82) 『일공사기록』 21, 往電第177號, 1903년 6월 24일, pp.309-310; 『皇城新聞』 1903년 5월 9일, 1903년 6월 30일, 1903년 7월 3일.

귀경시켜 이토(伊藤博文)와 고무라(小村壽太郎) 등에게 보내 동아시아의 시국과 만주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탐지하려 했다.⁸³⁾ 한편으로 고종은 예식원 번역과장 현상건을 러시아에 파견하여 국외중립의 가능성을 타진하려 했다.⁸⁴⁾ 그에 따라 고종은 현영운과 현상건을 8월 3일과 8월 21일 각각 일본과 유럽에 파견했다.⁸⁵⁾ 동시에 고종은 1903년 8월 네덜란드 대통령에게 국서를 보내 현재 동양의 풍운으로 만국평화회의의 가입을 서두르니 속히 가입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⁸⁶⁾

한편 고종은 대청외교의 강화를 위해 1901년 10월 북경에 공사관을 설치했다.⁸⁷⁾ 고종은 외부대신 박제순을 11월 일본에 파견하여 국방동맹, 망명자 문제를 타진하고 만한국환론에 대한 일본정부의 의향을 탐지하게 했다.⁸⁸⁾ 12월 귀국한 박제순은 1902년 1월 외부대신에 복직한 후 자신이 주청공사로서 부임하는 것을 소망했다. 그는 청이 이미 일본과 제휴하고 있으니 한국 역시 일본과 제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종은 만주 문제에 관한 청·일 양국의 친밀 정도를 확인하고, 청 황실 및 정부의 의향을 확인하려 했다. 고종은 박제순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북경에 파견하기로 결정하고⁸⁹⁾, 1902년 8월 박제순을 주청공사로 파견했다.⁹⁰⁾ 고종이 과거 청에서 근무한 바 있고, 수년간 외부대신을 역임한 바 있던 비중있는 인물을 주청공사로 파견한

83) 『일공사기록』 20, 기밀제129호, 1903년 8월 1일, p.279.

84) 『奏本』 6,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3, p.398; 『황성신문』 1903년 7월 3일.

85) 현상건의 임무는 표면적으로는 만국평화회의의 참석으로 공표되었고, 탁지부에서는 이 명목으로 2,100원의 여비를 지급하였다. 『奏本』 6, 光武 7년 8월 19일, p. 398.

86) 1903년 8월 15일의 국서(문서번호 635)는 고종이 네덜란드 대통령에게 보내 것으로서 민영찬을 보내 1902년 8월 만국평화회의의 가입을 교섭하게 했는데, 현재 동양의 풍운으로 가입을 서두르니 가입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이다.

87) 『皇城新聞』 1901년 11월 30일, 12월 4일, 1902년 1월 9일, 1월 21일.

88) 『일공사기록』 16, 機密第115號, 1901년 10월 29일, p. 354; 『일공사기록』 16, 機密第119號, 1901년 11월 1일, pp. 73~74.

89) 『일공사기록』 18, 機密第22號, 1902년 1월 31일, p. 4.

90) 1902년 9월 22일의 신임장(문서번호 669)은 고종이 청국 황제에게 보낸 것으로서 의정부 찬정 박제순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북경에 주차시켜 교섭을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1902년 9월 22일의 3종의 문서(문서번호 646)는 박제순의 신임장(문서번호 669)를 작성하기 위한 초본과 고종이 박제순에게 당부하기 위해 작성한 유서(諭書)와 훈유문(訓諭文)이다.

것은 청의 대외정책을 면밀히 파악하고 청과의 제휴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3. 러일전쟁 발발 전후의 공사파견

고종은 8월 18일 고영회·이범진에게 한국의 영토를 유린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조속히 러·일정부로부터 받아낼 것을 지시했다.⁹¹⁾ 고영회는 9월 3일 고무라 일본외상을 방문하여 공식적으로 중립을 요청하는 외부대신 이도재 명의의 조회서를 수교했다. 고무라는 전쟁이나 중립을 말할 때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⁹²⁾ 그런 가운데 고종은 10월 28일 주일공사를 고영회에서 이지용으로 교체했지만 이지용은 부임하지 않고 외부대신 서리에 취임했다. 그 무렵 주미공사 조민회는 헤이(John Hay) 미국무장관에게 한국의 위험한 상황을 설명하고 러·일 대립시 지원을 요청했다.⁹³⁾ 그 뒤 조민회는 1904년 1월 8일 주일공사로 자리를 옮겼다.

고종은 현상건을 특사로 파견하여 프랑스·러시아에 한국의 중립화를 타진하는 한편 러일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하여 만국평화회의의 등 국제기구를 통해 중재를 얻으려 했다. 프랑스에 도착한 현상건은 프랑스 외상과의 면담이 실현되지 않자 주불공사 민영찬에게 중립에 대한 고종의 내지를 전달한 뒤 네덜란드로 출발하였다. 이후 그는 만국평화회의의·헤이그 상설국제재판소를 방문하여 한국의 영세중립을 제의하려 했으나 평화회의는 개최되지 않았고, 재판소는 휴정중이어서 평화회의의 담당자를 접촉하는데 그쳤다. 현상

91) 고종의 훈령 초안은 총세무사 브라운이 기초하였다. 『일공사기록』 21, 往電第268號, 1903년 8월 26일, p. 345.

92) 『日本外交文書』 36卷, 秘第1號, 1903년 9월 3일, p.723; 『일공사기록』 19, 來電第134號, 1903년 9월 3일, p. 303; 『일공사기록』 20, 기밀송제77號, 1903년 10월 6일, p. 337; 같은 책, 기밀송제7호 사, 1903년 9월 26일, p. 338.

93) 고종은 헤이가 한, 미간의 우호를 고려하여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을 약속했다는 보고를 받아 크게 기뻐하며 감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K-A-R III, No.799. 1904년 9월 39일, p. 189-190.

건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1903년 11월 14일 러시아 수도에 도착 후 이범진을 만나 중립문제를 상의했다. 현상건이 프랑스를 출발한 이후 민영찬은 프랑스정부에 대해 중립실현을 위하여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청원하였다. 이범진은 러시아 외무성의 프린스 오보렌스키(Obolensky)에게 한국중립에 관한 신청을 제출했다.⁹⁴⁾

고종은 러·일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외중립을 지키려는 의사가 강했다. 고종이 현상건을 프랑스·네덜란드·러시아 등 유럽국가에 특사로 파견한 것은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주한프랑스 대표 폰트네(Vicomte de Fontenay)가 국외중립선언문을 작성하였고, 국외중립선언문은 1904년 1월 21일 지부주재 프랑스부영사를 통해 각국에 발송되었다. 고종은 영국·프랑스·독일 등이 국외중립선언의 접수를 통보하자 독립불가침을 승인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⁹⁵⁾ 그러나 대부분의 열강은 한국의 국외중립에 대해 무관심한 입장을 보였다.⁹⁶⁾ 고종은 국외중립 선언 직후인 1월 30일 민영찬에게 적십자 회의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다.⁹⁷⁾

그 뒤 고종은 2월 6일 해외 주재 공사들의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고종은 의정부 찬정 주석면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했고, 주러공사 이범진은 독일 및 오스트리아 공사로 전보했다. 고종은 주미공사 조민회를 해임하고 독일 및 오스트리아 공사인 민철훈을 주미공사로 전보했다. 고종은 주영공사 민영돈을 해임하고 외부협판 박용화를 주영공사에 임명했다.⁹⁸⁾ 다시 정리하

94) 『일공사기록』 21, 往電第247號, 1903년 8월 19일, p. 336; 李昌訓, “20세기 초 프랑스의 대한정책,” 『한불외교사』, 평민사, 1987, p. 110.

95) K-A-R III, No.720. 1904년 4월 14일, pp. 126~127.

96) 『일공사기록』 18, 往電第80號, 1904년 1월 24일, 474; 박희호, 『구한말 한반도중립화론 연구』,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pp. 189~192.

97) 『駐法比來去案』, 報告第1號, 光武 8년 1월 31일.

98) 1904년 2월 6일의 신임장(문서번호 656)은 고종이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것으로서 의정부 찬정 주석면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러시아 수도에 주차시켜 교섭을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1904년 2월 6일의 신임장(문서번호 657)은 고종이 오스트리아 황제 겸 보헤미아 군주·헝가리 전교군주에게 보낸 것으로서 중1품 이범진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오스트리아 및 보헤미아와 헝가리 수도에 주차시켜 교섭을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1904년 2월 6일의 해임장(문서번호 683)은 고종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서 조민회의 해임을 알리는 내용이다. 1904년 2월

면 주러공사는 이범진에서 주석면으로, 조민회의 주일공사 전임으로 공석이었던 주미공사는 민철훈, 주독일 및 오스트리아공사는 민철훈에서 이범진, 주영공사는 민영돈에서 박용화로 교체됐다. 이상과 같은 고종의 조치는 구미 국가와의 외교를 한층 강화하여 주권을 수호하려 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인사 내용은 달랐다. 육군참장 주석면은 강원도관찰사에 임명되어 러시아공사로 부임하지는 않았다. 이범진도 러시아에 잔류해 독일·오스트리아 공사로 부임하지는 않았다. 민철훈도 독일에 잔류해 주미공사로 부임하지는 않았다. 박용화도 외부협판, 궁내부 협판 등에 임명되어 주영공사로 부임하지는 않았다. 영국공사는 민영돈이 그대로 근무했다. 그 결과 2월 6일 당시 실제 재직 한 사람은 주러공사 이범진, 주영공사 민영돈, 주미공사 신태무, 주독공사 민철훈, 주불공사 민영찬, 주일공사 조민회였다.

고종은 러일전쟁 발발 직후인 3월 31일 조민회를 해임하고 이토 히로부미 등과 친분이 있던 현영운을 일본 주재 특명전권공사에 임명했다.⁹⁹⁾ 그렇지만 현영운은 4월 12일 일본군대 접대위원장에 임명되어 주일공사로 부임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조민회가 4월 7일 일본 주재 특명전권공사에 유임됐고, 1905년 11월까지 일본 주재 공사로 재직했다. 현영운의 미부임은 일본 외상이

6일의 신임장(문서번호 661)은 고종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서 중2품 민철훈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미국 수도에 주차시켜 교섭을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1904년 2월 6일의 신임장(문서번호 685)은 고종이 오스트리아 황제 겸 보헤미아 헝가리 대군주에게 보낸 것으로서 민철훈의 해임을 알리는 내용이다. 1904년 2월 6일의 해임장(문서번호 689)은 고종이 독일 황제에게 보낸 것으로서 민철훈의 해임을 알리는 내용이다. 1904년 2월 6일의 해임장(문서번호 690)은 고종이 독일 황제 겸 프로이센 군주에게 보낸 것으로서 민철훈의 해임을 알리는 내용이다. 1904년 2월 6일의 해임장(문서번호 686)은 고종이 영국 군주에게 보낸 것으로서 민영돈의 해임을 알리는 내용이다. 1904년 2월 6일의 신임장(문서번호 659)은 고종이 독일 황제에게 보낸 것으로서 이범진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독일 수도에 주차시켜 교섭을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1904년 2월 6일의 신임장(문서번호 660)은 고종이 독일 황제 겸 프로이센 군주에게 보낸 것으로서 이범진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독일 및 프로이센 수도에 주차시켜 교섭을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1904년 2월 6일의 신임장(문서번호 658)은 고종이 영국 군주에게 보낸 것으로서 외부협판 박용화를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영국 수도에 주차시켜 교섭을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99) 1904년 4월의 해임장(문서번호 684)은 고종이 일본 군주에게 보낸 것으로서 특명전권공사 조민회의 해임을 알리는 내용이다. 1904년 4월의 신임장(문서번호 654)은 고종이 일본 황제에게 보낸 것으로서 현영운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일본 수도에 주차시켜 교섭을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현영운의 부임을 반대했기 때문이었다.¹⁰⁰⁾

고종은 러일전쟁 발발로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받자 폰트네 프랑스 대리공사를 통해 러시아와 통신했다. 또 고종은 측근 현상건, 이학균, 이용익 등을 해외에 보내 일제의 침략을 폭로했으며, 한국 상황을 적은 국서를 제작한 뒤 조약을 체결한 구미국가들의 통치자에게 전달했다.¹⁰¹⁾ 한국 정부는 일본의 강요로 5월 하순 기존 한러간 조약의 무효를 선언했다. 고종은 내밀하게 이범진이 계속 러시아에 체류할 것을 지시했다. 일본은 2차 한일협약을 체결한 직후인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주재 한국공사관의 철수를 추진했고, 1905년 2월에는 고종에게 해외 파견 공사의 소환을 요구했다.¹⁰²⁾ 그렇지만 고종은 미·프·영·독·일 공사를 잔류시켰다. 일본은 1905년 5월 한국의 우편전신관리 업무를 강제 편입했다. 민영찬은 파리주재 러시아대사에게 일본은 한국의 통신수단을 장악한 뒤 해외 공사관에서 보내는 전보를 검열하고 공사관 운영자금의 송금도 방해한다고 통보했다. 고종은 민영찬이 재정곤란으로 귀국을 요청하자 귀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¹⁰³⁾ 그러나 해외에 주재했던 한국 공사들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을 계기로 철수했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고종의 공사파견과 그 의미를 크게 최초의 공사파견 시기, 청일전쟁 전후 시기, 러일전쟁 전후 시기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각 시기마다 드러난 고종의 외교 목표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기로 한다.

100) 『일공사기록』, 내전제155호, 1904년 4월 2일.

101) 『러시아문서 요약집』, 1904년 12월 28일, p. 17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5, 기밀제53호, 1905년 4월 1일, p. 39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6, 제51호, 1905년 2월 8일, p. 17.

102) 『일공사기록』 24, 1904년 8월 30일, <상주문>, p.204; 『일공사기록』 24, 왕전제71호, 1905년 2월 23일, p. 318.

103) 『러시아문서 요약집』, 1905년 5월 4일, p. 309.

1880년대 청의 극심한 외압을 받고 있던 고종은 청과의 조공관계를 종식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러므로 고종은 국가주권 확립을 외교 목표로 설정했다. 고종은 공사파견으로 청과의 조공관계를 종식시키고 국가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종은 열강이 한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기를 열망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구미 각국에 공사를 파견하기로 결심했다. 고종은 공사파견에 대해 조약규정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고 열강에 한국독립을 증명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그에 따라 고종은 1887년 내무부협판 조신희를 프랑스·러시아·영국·독일·이탈리아의 전권공사로 임명했고, 박정양을 주미공사에 임명했다. 고종은 청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공사파견을 강행했다. 유럽에 대한 공사파견은 실패한데 비해 미국 공사파견은 성공했다. 그러므로 공사관이 설치된 미국이 해외 외교의 중심 역할을 했다. 미국 주재 공사는 고종의 해외 외교의 시금석이 됐다. 박정양은 자주외교를 추구하고, 워싱턴에 공사관을 개설했으며 영사관을 증설해나갔다. 그러나 청은 한국에 압력을 행사하여 박정양의 소환을 관철시키는 등 한국의 주권을 유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유럽열강과의 외교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고종은 청, 일의 침략을 받을 경우 통상조약 제1조의 거중조정조항에 의거하여 구미 열강에게 중재를 의뢰하고자 했다. 또 고종은 구미열강을 통해 한국의 중립화에 관한 국제협정을 체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후 한국은 청일전쟁을 계기로 청과의 조공관계를 종식하는 등 청으로부터 국가주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한국은 마침내 조공체제를 탈피하고 만국평등에 입각한 근대국체법 체제에 진입했다. 그러나 청을 축출한 일본은 한국보호국화를 시도하는 등 한국의 자주권을 유린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은 한국에 자국의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러므로 고종은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는데 외교 목표를 설정했다. 고종은 일본을 견제하고자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 접근했으며, 그 과정에서 구미 국가들과의 외교를 강화하고자 했다. 고종은 1895년 3월 외교관제도를 칙령으로 반포했다. 아울러 고종은

10월 의화군을 독·영·러·이태리·프·오스트리아의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했고, 12월에는 미국 주재 한국 대표를 특명전권공사로 승격시킨 뒤 최측근 이범진을 주미공사로 파견했다.

한편 러·일은 1896년 베베르·고무라각서 및 로바노프·야마가타의정서를 비밀리에 체결하여 한국의 주권을 유린했다. 고종은 1897년 2월 러·일의 협정체결 사실을 인지하자 일본은 물론 러시아도 경계했다. 고종은 한국 주재 미국·영국·프랑스공사들에게 중재를 의뢰하는 한편 3월 민영환을 유럽의 특명전권공사로 파견했다. 고종은 민영환으로 하여금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내용의 비밀협정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 유럽과의 협정 체결은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민영환은 유럽에 실제로 부임한 최초의 공사였고, 민영환 부임을 계기로 마침내 유럽이 한국의 외교무대가 됐다.

고종은 1897년 10월 황제를 호칭하고 대한제국을 수립했다. 그같은 고종의 조치는 만국공법에 의거하여 한국의 자주독립을 내외적으로 천명하려 한 것이었다. 고종은 유럽열강이 칭제를 승인하자 성기운을 영국·독일·이태리 전권공사로 파견하여 유럽 열강과의 외교를 강화하고자 했다. 한편 고종은 1898년 4월 로젠·니시협정 체결과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철수로 일본의 한국 내 영향력이 강화되자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고종은 주미공사 이범진을 러시아 주재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러시아와의 외교를 강화했다.

1900년에 확산된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러·일의 대립은 더욱 첨예하게 전개됐고, 1901년 3월 경에는 러일전쟁의 위기가 있었다. 고종은 러·일의 대립이 첨예화하자 러일전쟁 발발을 감지했다. 고종은 러일전쟁에서 어느 국가가 승리하더라도 한국의 자주권을 심각하게 유린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종은 8월 조병식을 일본 주재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했다. 고종은 조병식에게 일본주재 외교사절들과 협의하여 이들로 하여금 한국 중립에 대한 국제협정을 본국 정부에 제의하게 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으로 고종은

유럽열강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독립을 보장받으려는 목적으로 거액의 내탕금을 지출하여 1901년 3월 러시아·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열강국에 특명전권공사를 파견했고, 상설 공사관을 설치했다. 그 결과 한국은 유럽 공사파견을 계기로 미국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탈피하고, 유럽을 한국 외교의 주무대로 삼게 됐다. 고종이 유럽 열강국에 특명전권공사를 파견한 것은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한국에 파견한 외교관의 지위를 변리공사·대리공사에서 전권공사로 승격시키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그리고 승격된 유럽의 전권공사들로 하여금 러시아·일본공사의 강경한 대한정책을 조정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1902년 1월 체결된 영일동맹은 러·일의 전쟁 가능성을 증폭시켰다. 고종은 영일동맹 체결 직후 러, 일간의 대립이 더욱 격렬해지자 국제기구를 이용하여 국권을 수호하는데 외교 목표를 설정했다. 고종은 민영환을 주프랑스공사 및 주벨기에공사로 임명한 뒤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만국평화회의·적십자회의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게 했다. 이는 국제기구를 통해 유사시 거중조정을 의뢰하고 중립화를 실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한편으로 고종은 일본의 동맹국인 영국의 지원을 얻어 일본을 제어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1902년 영국에 특사를 파견했다. 동시에 고종은 외부대신을 역임한 박제순을 주청공사로 파견하여 영일동맹의 공동피해국인 청과의 외교를 강화하고자 했다.

고종은 1903년 러일전쟁 발발의 위기를 감지하자 영토를 보전하는데 외교 목표를 설정했다. 먼저 고종은 러, 일과의 직접 교섭을 시도했다. 고종은 1903년 주일공사 고영희, 주러공사 이범진에게 일·러정부로부터 한국의 영토를 유린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아낼 것을 지시했다. 다음으로 고종은 민영환에게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만국평화회의·적십자회의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교섭하도록 지시했다. 끝으로 고종은 1904년 1월 21일 국외중립선언문을 각국에 발송했다. 고종은 국외중립선언 직후 구미국가와의 외교를 강화하려

기도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재 공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고종은 재위기간동안 청, 일, 러 등으로부터 부단히 국권의 유린을 경험했다. 그러므로 고종은 1880년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서구열강과 수교한 이후 외부의 침략을 받을 경우 통상조약 제1조의 거중조정조항에 의거하여 서구열강에게 중재를 의뢰했다. 또 고종은 서구열강을 통해 한국의 중립화에 관한 국제협정을 체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한국의 중립화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주권을 보장받는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고종은 의화단사건 이후 러, 일간의 대립이 더욱 격렬해지자 국제기구를 이용하여 국권을 수호하는데 외교 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고종은 그같은 구상을 실현시키고자 부단히 공사를 파견했다.

참고문헌

- 『프랑스외무부문서』2,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3.
 『프랑스외무부문서』3,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4.
 『프랑스외무부문서』4,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5.
 『프랑스외무부문서』5,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6.
 『프랑스외무부문서』6,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7.
 『프랑스외무부문서』7,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8.
 『프랑스외무부문서』8,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9.
 『프랑스외무부문서』9,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10.
 박종효 편역,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관련문서 요약집』,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2002.
 강상규,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한반도』, 서울: 논형, 2008.
 김원모, 『개화기 한미 교섭관계사』,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3.
 김철웅, “주미공사 이범진의 미국 여정과 활동.” 『역사학보』 205, 2010.
 송병기, “소위 ‘삼단’에 대하여—근대 한청관계사의 한 연구—.” 『사학지』 6, 1972.
 오영섭, “동농 김가진의 개화사상과 개화활동.” 『한국사상사학』 20, 2003.
 이민식, 『근대 한미관계사』, 서울: 백산자료원, 2001.
 임경석 편, 『한국근대 외교사전』,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그렛트 파스칼, “고종과 프랑스.” 『한국문화연구』 12, 2007.
- George M. McCune and John A. Harrison, *Korean-American Relations VOLUME I (1883~1886)*.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1.
 Spencer J. Palmer, *Korean-American Relations VOLUME II (1887~1895)*.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63.
 Scott S. Burnett, *Korean-American Relations VOLUME III (1896~1905)*.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9.
- 『일본외교문서』, 동경: 일본국제연합협회, 1985.
 『소련외교사』, 동경: 원서방, 196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권 1~26,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3
 『영국외무성 한영외교사관계자료집』 서울: 동광출판사, 1997.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주법비래거안』, 서울대학교 규장각, No.18065.

『주본』5,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6.

『구한국외교문서 미안』,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8.

『구한국외교문서 법안』,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8.

『구한국외교문서 영안』,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8.

『구한국외교문서 일안』,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8.

『구한국외교문서 덕안』,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8.

『구한국외교문서 아안』,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8.

『구한국외교문서 청안』,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8.

『구한국외교문서 하안』,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8.

『구한국외교문서 비안』,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8.

ABSTRACT

The object of dispatch of Minister plenipotentiary of King Kojong

Hyun, Kwang-Ho(Korea University)

First, King Kojong took aimed at to safeguard sovereignty safeguard as foreign policy. The advice of the diplomatic mission and foreign adviser affected independent foreign policy of Korea. King Kojong accredited Minister plenipotentiary in U.S. and Europe in 1887.

Second, King Kojong took aim at checking Japan's invasion as foreign policy about the time of the loss of the sino-Japanese War. King Kojong accredited Min Young Whan as Minister plenipotentiary in U.S. and Europe in 1897.

Third, King Kojong took aim at checking Japan's invasion as foreign policy. King Kojong planned to tempt Western Powers. King Kojong to check Japan's invasion. King Kojong accredited Lee Buem Jin as Minister plenipotentiary in Russia.

Fourth, The Boxers entered into Peking in June of 1900 and the allied forces seized Peking. King Kojong tried to safeguard sovereignty safeguard by through the mediation of Western Powers. King Kojong accredited Minister plenipotentiary in Europe in 1901. At the time King Kojong set up resident embassy in Great Britain, France, Germany.

Fifth, the Anglo-Japanese alliance of January 1902 exerted an important impact on the diplomatic policy of King Kojong. The Great Han Empire became a member of the peace Conference of all nations and the Red Cross convention.

Sixth, King Kojong prepared for the outbreak of the Russian-Japanese War. King Kojong ordered to Min Young Chan to negotiat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the safety of the Great Han Empire.

Keywords : King Kojong, Minister plenipotentiary, U.S., France, Germany, Great Britain, a peace Conference of all nations, the Red Cross convention

투고일: 2013년 06월 30일, 심사일: 2013년 07월 22일, 게재확정일: 2013년 08월 06일